基本火災保險契約論

方　甲　洙

<目　次>

I. 序　論
II. 基本火災保險契約
1. 附保合意契約(Insuring Agreement)
2. 標準約款
III. 結　論

I. 序　論

財產保險 가운데 가장 널리 普及되어 있는 保險이 곧 火災保險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保險은 一般社會 大衆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겠다. 이런 意味에서 이 火災保險을 財產保險 가운데서 가장 먼저 說明하기로 한다.

火災保險을 認識함에 있어서는 火災保險의 契約을 理解함이 첩경이라고 하겠다. 近來에 이르러 保險이 多樣化되어 가고 이에 따라 그 形式이나 內容이 複雜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火災保險의 種類도 적지 않으나 基本契約부터 考察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 保險은 比較的 歷史가 오래고 普遍化되어 있기 때문에 標準化된 保險契約을 일찍부터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 標準火災保險契約은 우리나라에서 使用하고 있는 所謂 火災保險普通保險約款과 歐美諸國에서 使用하고 있는 外國契約으로 區分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것은 日本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흔적이 엿보이고 다소 진부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主로 先進國 特히 美國의 標準火災保險約款을 中心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큰 기업에서는 이 美國約款을 使用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火災危險에 대한 保險措置는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서는 統一된 標準約款을 使用하며 이를 基礎로 하여 그 內容을 修正하고 補完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各種의 特別約款을 制定하여 使用한다.

오늘날 美國에서 標準火災保險約款으로 使用하고 있는 것은 뉴욕(New York)州에서 法制化한 것으로 1887年에 처음으로 標準約款을 制定한 뒤 많은 法廷의 解釋을 거치고 여러

形態의 問題를 겪음에 따라 修正을 거듭하였다. 오늘날 使用하고 있는 것은 1943年 約款이다. 이 約款은 1873年의 마사츄셋츠(Massachusetts)約款, 1887年 뉴욕約款, 1918年 뉴욕約款 등에 比하여 한결 簡略하고 짧다.

英國에서는 1923年에 火災保險機關의 하나인 Fire Offices' Committee에서 그들의 會員會社를 위해서 國內用으로 標準約款을 制定하였으며 非會員會社와 로이즈(Lloyd's)도 이 約款을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事實上 英國內에서는 統一된 火災保險約款을 使用하고 있다고 하겠다.

日本에서는 火災保險約款을 1887年에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英國會社의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었다. 그후 여러 회에 걸친 修正을 통하여 日本에서 統一約款으로 使用하게 된 것은 1941年의 일이며 이를 「昭和 16年約款」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 約款은 26個條로 되어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使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그후 與件의 變動에 呼應하기 위하여 硏究를 거듭한 結果 改正을 본 것이 32個條로 되는 1960年 約款이며 이것이 現行約款이다.

本論文에서는 美國의 標準火災保險約款을 中心으로 基本火災保險契約의 內容을 우리나라와 日本의 火災保險普通約款과 比較하며 살펴 보기로 한다.

II. 基本火災保險契約

基本火災保險契約을 살펴 보는데 있어서 美國標準火災保險約款을 條項別로 順序대로 考察하기로 하고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와 日本의 火災保險普通保險約款을 該當 條項에서 다루고 만약에 該當 條項이 없는 경우에는 別途로 取扱하기로 한다.

1. 附保合意契約(Insuring Agreement)

우리나라나 日本의 火災保險契約을 보면 前面에는 保險契約者名, 保險金額, 保險料, 保險期間, 保險目的物의 所在와 說明 등을 記載하고 있으며 이를 附保合意契約이라고 부르고 있고 後面서는 普通保險約款이 印刷되어 있다. 美國이나 英國의 경우는 附保合意契約이 먼저 앞서고 곧 이어서 標準約款이 계속된다. 여기에 明記해 둔 것은 美國이나 英國, 우리나라, 日本의 基本火災保險契約의 原理는 대체로 같다는 點이다. 여기에 美國의 標準約款을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基本火災保險契約을 살피는데 있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附保合意契約部分이다. 이 部分은 保險種類의 如何를 莫論하고 基礎的인 部分이며 核心的인 部分이라고 하겠다. 이 契約에서 保險者는 여기에 規定된 期間에 明示된 財產에

대해서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火災와 落雷와 같은 特定된 危險의 發生으로 經濟的 損失을 입을 경우 이를 補償할 것을 責任진다. 그러므로 이런 點을 보아서 그 內容이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이 部分이 곧 火災保險契約의 核心을 이룬다는 點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附保合意契約의 重要한 點을 살펴 보기로 한다.

保險期間

標準火災保險證券에는 保險의 效力이 發生하는 始期가 保險者와 保險契約者間에 合意된 日字의 正午(noon)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特別히 附保財產所在地의 標準時間에 따른다는 點을 明確히 하고 있다. 그리고 保險效力의 終期는 亦是 契約當事者들이 合意한 日字의 正午(noon)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英國의 例를 좇은 日本의 본을 따서 「保險期間은 그 初日의 午後 4時에 開始하여 末日의 午後 4時에 終了함」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美國이나 英國과 같은 先進國의 慣行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保險契約締結과 같이 文書記錄을 통해서만 保險의 效力이 發生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財產保險에 관한 限 경우에 따라서 口頭로도 얼마든지 保險效力發生이 可能하다. 即 保險契約者가 火災保險契約의 發行을 口頭로 依賴하면 保險者는 直接 또는 保險代理人을 통하여 口頭로 即時 保險效力의 發生이나 保險者의 責任開始를 通知하기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相互間에 合意된 日字를 택해서 責任開始를 하도록 하기로 한다.

이 경우 口頭로 保險의 責任開始를 通告한 保險者나 그의 代理人은 「바인다」(binder)라고 하는 假契約書를 短期間 原保險契約이 締結될때까지 有效하도록 發行한다. 一般的으로 이 假契約書의 有效期間은 15일이다. 原契約이 發行될 때에는 그 責任開始日을 遡及해서 假契約書의 것과 같이 하는 것이 通例이다.

여기에서 保險效力이 發生하는 時間을 正午나 또는 午後 4時로 하였는데 이것은 絶對不可侵은 아니며 保險契約者가 願하면 이 時間을 變更할 수도 있는 外 이 경우 그 時間을 特約으로 證券에 明記해야 한다.

保險效力의 消滅에 있어서는 保險期間의 末日의 正午나 또는 午後 4時로 되어 있다고 함은 前述한 바이고 여기에 問題가 될 수 있는 것은 火災가 保險效力消滅前에 發生하고 大部分의 損害는 그 후에 發生하였을 경우이다. 外國의 判例는 이런 경우에는 保險者가 全的으로 責任을 지고 補償하도록 되어 있다.

保險金額

火災保險契約에는 保險金額이 明示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保險者가 證券에 明記된

保險金額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火災危險이 發生할때 無條件 全額을 支給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金額이 保險者가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에게 支給할 수 있는 最高限度로 表示되어 있는데 不過하다. 그러므로 實際支給保險金은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實際로 입은 損害에 따라서 決定된다. 또한 火災로 因하여 損害가 發生하였다고 해서 이에 被害를 입은 財產과 關係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를 莫論하고 保險金을 支給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保險契約에 明示된 사람에 限하여 支給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附保險財產에 利害關係가 있는 사람으로서 火災保險의 保護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保險契約에 明文으로 記錄되어 있어야 한다. 美國契約에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法定代理人, 相續人과 遺產執行人은 自動的으로 保險金支給對象者에 包含되도록 明記되어 있다.

火災保險契約은 實損補償原則을 適用하는데 이는 곧 實際現金價値 또는 實現價(actual cash value)에 立脚한 補償을 말하는 바 火災로 損害를 입을 경우에는 實際現金價值를 限度로 補償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原則이 目的으로 하는 바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實際로 입은 損害를 補償함으로써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를 損害發生 以前狀態로 復歸시키는데 있으며 이 實際現金價値의 基準은 理論的으로는 市場價格이나 帳簿價値일 수도 있으나 --般的으로 現實的으로는 代替費(replacement cost)에서 減價償却費를 控除한 것을 말하여 一般的으로 이러한 方法으로 測定한다. 原則的으로 이 保險契約에 있어서는 낡은 것을 새 것으로(new for old) 代替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火災保險과 關聯해서 말하는 減價償却費에는 經濟的인 頹廢要因도 包含한다. 따라서 實際現金價値를 算定함에 있어서는 特定한 財產에 대한 使用年限, 使用用途, 企業環境의 變化, 周邊環境의 變化 등을 모두 減價償却費를 算出하는데 考慮하게 된다. 그러므로 火災로 因한 財產損害金額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그 財產의 自然 減價와 아울러 頹廢(obsolescence)로 因한 減價도 考慮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美國의 標準火災保險證券 가운데 附保合意契約(insuring agreement)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保險金支給原則에 대하여 明確히 規定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支給保險金算定原則에 있어서 修理費나 代替費의 支給原則을 規定하고 있는 바 보는 觀點에 따라 이는 確實히 混亂을 加重시킬 可能性이 있다고 하겠다. 即 火災로 因하여 財產에 대한 損害가 發生할 경우에는 앞서 說明한 바와 같이 實際現金價値에 該當하는 實損補償을 하는 것이지만 이 實際現金價値 또는 實現價가 이 財產에 대한 修理費나 代替費를 超過할 경우에는 保險金額을 最高限度로 하여 이에 所要되는 修理費나 代替費를 支給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런 規定은 決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에게 有利

한 規定이기 보다는 保險者를 위한 規定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損害發生時에 있어서 保險者의 補償限度를 設定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 上限이란 代替費用에서 減價償價費를 控除한 것일 수도 있고 最高補償限度인 保險金額에 未達할 경우에 있어서는 同種의 材料를 使用하여 修理하는데 所要되는 費用일 수도 있으며 代替費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代替費를 測定하는데 있어서 注意해야 할 것은 火災가 發生한 뒤 새로 代替하는데 있어서 各種 法令에 의해서 增加되는 費用에 대해서는 補償額에 包含하지 않는다고 明文化하고 있다는 點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各種 法令에 의한 費用增加란 예를 들어 都心地에 位置한 木造建物이 燒失되었을 경우 法에 의하여 木造建物 建築이 禁止 當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또한 建物이 어느 限度 以上으로 燒却當할 경우 이 建物을 헐어 버리도록 要求하는 法規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基本火災保險契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벽돌이나 鋼鐵로 짓는데 所要되는 增加費用이나 燒殘建物破壞에 所要되는 費用은 補償되지 않는다.

標準火災保險證券은 火災나 落雷로 因하여 發生한 直接的인 損害만을 補償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間接的인 損害에 대해서는 補償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間接的인 損害의 補償을 願할 경우에는 特約을 別途로 締結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에는 火災로 因한 直接 損害만을 對象으로 한다.

擔保危險

美國의 基本火災保險契約에 있어서는 擔保危險에 관한 規定이 附保合意契約에 明記되어 있는데 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證券後面의 普通保險約款에 規定되어 있다. 여기에 美國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美國의 火災保險附保合意契約에 明記된 擔保危險은 첫째로 火災고 둘째로 落雷이다. 첫째로 火災危險擔保에 있어서는 「火災로 因한 모든 直接損害」(against all direct loss by fire)라고 表現되어 있으며 「火災」나 불(fire)에 대한 定義는 내려져 있지 않다. 「火災」나 불에 대한 定義도 흔히 法廷에서 내려지고 있으며 여기에 그 定義를 紹介하여 보면 불이란 酸素와의 結付가 急速하여 火焰이나 白熱이 일어남을 말한다고 하였다. 불은 恒常 燃燒를 隨伴하게 되나 燃燒는 반드시 불을 隨伴하는 것은 아니라 熱이라던지 煙氣라던지 水蒸氣의 發生은 불이 있었던 證據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불이 일어났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불꽃을 수반하지 않고 熱로 꺼멓게 그슬리거나 숯으로 된다고 하여 이것을 火災라고 할 수는 없다. 自然發火(spontaneous combustion)가 그 좋은 例인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불

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自然發火는 外部的인 作用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內部的으로 일어난 熱로 起因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自然」(spontaneous)이란 말은 이런 現象이 일어나는 原因을 말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燃燒나 自然發火의 速度가 빨라서 火災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이렇게 火災가 일어날 때까지는 燃燒만 가지고 火災라고 할 수는 없다. 火災나 불이라고 말 할 수 있으려면 燃燒는 그 進行速度가 매우 빨라서 불꽃이나 白熱이 수반되어야 하며 熱의 量이 제아무리 많다고 해도 發火가 될 때까지는 火災나 불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불」의 定義에 있어서 分明히 해 두어야 할 것은 「불」의 區分이다. 「불」을 둘로 分類하여 하나는 友好的 불(friendly fire)이고 다른 하나는 非友好的 불(unfriendly fire) 또는 敵對的 불(hostile fire)이다.

元來 保險은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에게 不利한 事故가 發生하여 입게 되는 損失에 대한 經濟的 補償을 目的으로 하는 까닭에 事故發生原因에 있어서 偶發的이고 突發的이며 偶然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의 경우 故意的으로 일부러 일으킨 불로서 애당초 계획했던 範圍를 벗어나지 않고 人間에게 效用을 줄 경우에는 이를 友好的 불이라고 하고 이런 따위의 불로 因한 損害는 保險에서 補償對象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불이 원래 계획되었던 場所나 限界를 벗어나 擴大될 경우에는 사람에게 不效用을 주게되며 그 불을 統制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불을 非友好的 불 또는 敵對的 불이라고 하며 一般的으로 이런 불을 火災라고 말한다. 이렇게 非友好的 불로 因한 財產損害는 火災保險에서 補償해 준다.

例를 들어 난로안의 불이나 fireplace 안의 불이나 oil burner 안의 불이나 용광로 안의 불은 友好的 불이다. 그러므로 이런 불로 因한 煙氣, 그을음, 열 등의 形態로 일어난 損害는 保險의 補償對象이 되지 않는다. 例를 들어 室內煖房用 오일 스토부에서 새어나온 그을음이나 煙氣로 말미암아 室內의 家財에 損害을 입힐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불이 일단 원래의 장소를 벗어 나올 경우에는 非友好的 불이 되며 火災保險의 補償對象이 된다. 例를 들어 아궁이의 불이 밖으로 번져나와 부엌 문간을 태울 경우에는 火災保險에서 補償해 준다.

基本火災保險契約의 附保合意契約에는 火災나 落雷로 因한 直接損害(direct loss)를 對象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法廷에서는 이 直接 損害란 火災나 落雷로 因한 가장 가까운 損害를 말한다고 解釋하였다. 따라서 非友好的 불로 因하여 생긴 煙氣, 熱, 消火를 위하여 使用한 물이나 그밖의 化學物質 등으로 입은 損害, 消防夫나 그 밖의 鎭火作業에 從事한 사람에 의한 財產損害, 그리고 기타 火災에 의하여 避치 못하게 발생한 財產損害는 直

接損害로서 火災保險에서 補償하게 된다. 火災와 같은 한 危險이 發生하여 連鎖的으로 갖가지 形態의 損害가 일어 났을 경우에는 近因(proximate cause)을 가려내서 그것이 損害發生의 效率的인 原因의 與否를 究明해야 한다. 이 경우 主原因과 副原因을 가려서 時差的으로 副原因이 主原因보다 가까왔다고 하드라도 副原因으로 因한 損害는 따지지 않고 主原因으로 因한 損害만을 따지게 된다. 多少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어떤 建物이 火災로 因하여 타버렸는데 파괴된 담이 그대로 放置되어 있다가 이틀 후 무너져서 옆집 財產에 피해를 주었다. 이 경우 옆집의 火災保險會社는 이 損害를 火災로 因한 것이라고 判定하여 이를 補償하였다.

그러나 萬一 消火車가 火災現場에 달려가다가 火災保險에 附保된 財產에 被害를 입혔다고 한다면 이 경우 火災를 主原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損害는 火災保險에서 補償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消火車事故原因과 火災의 原因과는 別個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事例가 同一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고 다종다양하므로 原因究明이란 그리 쉽지 않다. 가장 明確한 形態의 損害는 非友好的 불로 인한 直接 損害이고 어려운 경우란 어떤 損害를 일으키는데 있어 몇가지 原因이 겹치는 경우이다.

擔保危險으로서 둘째번 危險은 落雷(lightning)이다. 落雷란 비록 熱이나 火災를 同時에 수반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莫大한 損害를 가져 올 수 있는 性質의 危險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火災와 落雷를 同時에 當하여 財產에 損害를 입힐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火災로 因한 損害이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落雷로 因한 것인지를 區別한다는 것은 極히 困難한 일이며 이런 事例의 發生을 排除하기 위하여 基本火災保險契約에는 이 두 危險을 모두 包含하였다.

1943年 뉴욕標準火災保險證書 以前에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火災危險만을 擔保하고 落雷를 包含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落雷로 因한 直接損害는 補償對象에서 除外하고 다만 落雷가 火災를 結果的으로 일으키는 경우에 限하여 火災로 因한 直接 損害만을 補償하였다.

擔保危險은 아니나 흔히 火災危險의 發生으로 因하여 當하기 쉬운 形態의 損害로 財產을 火災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옮기는 過程에서 입는 損害를 들 수 있으며 이를 明文化하여 補償함을 規定하고 있다.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契約을 통하여 火災와 같은 危險의 發生으로 因하여 附保財產에 損害를 입을 처지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被害를 防止하고 아울러 損害를 輕減시킬 義務가 있다. 即 그는 保險에 加入치 않을 경우 取했어야 했을 갖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은 財

産損害는 火災라고 하는 直接的이며 近因에 속하는 原因에 의한 것이므로 마땅히 保險者의 補償對象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疑問의 餘地를 남겨 놓지 않게 하기 위하여 基本火災保險契約에 明文化하여 移轉損害(loss by removal)를 擔保함을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移轉損害는 우리나라나 日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補償한다는 點을 明確히 規定하고 있다.

保險對象物의 表示

基本火災保險契約은 擔保危險을 明示하는 特定危險擔保契約(named perils or specified perils contract)로서 그 危險을 列擧하고 있음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고 保險의 對象이 되는 財産에 대해서도 契約에 明示하게 되어 있어 여기에 記錄된 財産에 限하여 損害를 입었을 경우 補償되는 것이다. 勿論 擔保危險을 追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特約(endorsement)을 締結하여야 하며 對象財産의 경우 動産과 不動産을 모두 包含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財産에 대한 明確한 表示가 있어야 한다. 財産의 表示는 그 財産의 位置나 種類, 數量, 特性 등에 대한 묘사를 말한다.

基本火災保險契約은 原則的으로 特定位置契約(named location policy)으로서 附保合意契約에 明示된 位置에 所在하는 財産에 限하여 保險의 對象으로 한다. 그러므로 證書에 明示된 財産을 表示된 位置로부터 移轉시켰을 경우에는 保險의 對象에서 自動的으로 除外된다. 萬一 이러한 경우를 考慮하여 保險의 對象에 계속 包含시키고자 할 때에는 特別히 特約을 締約해야 한다.

保險證書의 讓渡

保險證書의 讓渡(assignment)란 保險契約上의 法的 權利나 權益을 他人에게 移轉함을 말한다. 一般的으로 保險契約上의 權利는 別途 明文上의 法規나 契約規定이 없는 限 保險者의 承認이 없이도 讓渡가 可能하다 火災保險에 있어서 保險證券의 讓渡는 保險者의 承認을 얻은 뒤에라야 有效하도록 明文化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例外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란 損害가 發生한 뒤에 있을 수 있는 保險金에 대한 讓渡를 말한다.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保險對象의 財産이 他人에게 賣渡되었을 때 保險契約은 有效한 것이냐의 與否이다. 即 財産의 賣渡와 더불어 保險契約도 自動的으로 所有權과 같이 買受人에게 移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保險者의 同意를 얻어야 保險契約이 有效하며 이것은 保險契約者와 保險者의 裏書를 통하여 可能하다. 嚴格한 意味에서 보면 이런 경우를 保險契約의 讓渡라고 볼 수 없으며 新契約(novation)이라고 봄이 妥當하다. 即 保險者와 賣渡人과의 保險契約은 一旦 이 時點에 있어서 終了되고 새로

운 契約이 買受人과 保險者 사이에 締結되었다고 보아야 妥當할 것이다.

이런 경우 보다 合理的인 方法은 附保財產의 賣買와 때를 같이 하여 旣發行保險證券을 保險者에게 返送하고 買受人의 名義로 새 證券을 發行받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保險者는 證券에 裏書를 통하여 保險契約者인 賣渡人의 保險契約上의 權益은 特定日字로 終了되고 同日字로 그 財產의 買受人이 새로운 保險契約者로 原契約上의 權益을 繼承한다고 明文化하여 記錄하는 것이다.

2. 標準約款

앞서도 記述한 바와 같이 美國의 標準火災保險證券인 경우 이를 둘로 區分하여 첫部分을 只今까지 說明한 附保險合意契約이라고 부르고 둘째 部分을 標準約款(conditions and exclusions)이라고 부른다.

이를 順次的으로 說明하기로 한다.

隱蔽 또는 詐欺

標準火災保險證券中 後面의 標準約款에는 保險契約者가 損害發生前이나 後에 있어서 保險에 實質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事實에 관하여 故意的으로 은폐하거나 虛僞로 陳述하거나 또는 사기를 할 경우 保險契約의 效力을 喪失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詐欺(fraud)가 가장 흔히 개재될 수 있는 경우란 損害査定過程이다. 흔히 誇張된 損害額을 保險者에게 通知하거나 救助財產을 은폐시키거나 會計帳簿를 조작하거나 虛僞證言을 하거나 虛僞證明을 하는 경우 따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詐欺(frand)란 一般的으로 實質的으로 存在하는 事實을 故意로 虛僞陳述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입히는 것을 말하다. 그러므로 詐欺가 成立되려면 詐欺를 하려는 意圖가 있어야 하고 被害를 입은 사람은 그의 虛僞陳述에 의해서 實際로 損害를 입었어야 하며 이 경우 虛僞陳述은 實質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實質的인 事實(material fact)이란 保險契約에 있어서 어떤 事實이 事實대로 保險者에게 알려졌었다면 保險引受가 拒絶되었었거나 實際 締結된 內容과는 다른 條件으로 契約을 締結하였었을 事實을 말한다. 은폐 또는 詐欺條項에 의해서 保險契約이 解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保險者를 誤導하고 誤誘하려고 하는 意圖(intention)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要件이 缺如될 때에는 保險契約을 解除할 수 없다. 虛僞陳述이나 은폐를 論하는데 있어서 實際에 當面하는 경우란 千差萬別하므로 그 有無를 판가름하기가 그리 容易하지 않다. 例를 들어 保險契約者에게는 保險者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事實에 대한 不告知義務는 없다고 一般的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保險請約書에 대한 記載에 있어서 設定한 質問에 대해서만 正直하게 對答하면 足한 것이고 保

險者가 반드시 알아야 할 重要한 事實로서 普通努力으로는 發見할 수 없는 것이 아닌 限 그밖의 事實에 대해서 告知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하고 있다.

火災保險契約에 있어서 때때로 請約時나 그밖의 경우에 있어서 誓約書를 쓰거나 誓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虛僞誓約時에는 詐欺나 은폐로 認定當하여 保險者는 保險契約의 無效를 宣言할 수 있는데 그 理由는 虛僞誓約이 그 結果에 있어서 虛僞陳述이나 은폐와 同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善意로 犯한 過誤에 대해서는 이것을 理由로 保險契約을 無效로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規定이 있다. 火災保險普通保險約款 第6條에 保險契約 當時 다음의 事由가 있었을 때에는 保險契約을 無效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첫째로 他人을 위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하는 者가 그 事實을 保險請約書에 明記하여 保險者에게 申告하지 않을 때이고 둘째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目的이 이미 火災를 當함을 알았을 경우나 火災의 原因이 發生하여 있음을 알았을 때를 말한다.

또한 同約款 第7條에는 保險契約 當時 保險契約者나 그의 代理人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保險請約書의 記載事項에 관하여 아는 事實을 保險者에게 告知하지 않거나 不實의 事實을 告知하였을 경우 保險者는 保險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告知義務란 保險契約을 締結하는데 있어서 保險契約者가 保險者에 대해서 重要한 事實을 알리고 重要한 事項에 대해서 眞實을 告知해야 하는 義務를 말한다. 保險者는 保險契約者가 請約書에 記載한 事實을 土臺로 하여 危險을 測定해서 保險契約의 締結與否를 決定하고 締結을 決定할 경우 그 引受條件과 保險料率을 이를 基礎로 決定하게 된다. 保險者가 必要한 事實을 請約書에서 얻는 까닭은 危險測定에 必要한 事實을 일일히 그가 調査하기란 그리 容易하지 않기 때문이며 여기에 保險契約者의 協力이 必要한 緣由가 있는 것이다.

附保不能財產과 除外財產

火災保險基本約款에서 擔保하지 아니하는 財產은 이를 둘로 區分해서 하나는 火災保險에 附保할 수 없는 附保不能財產(uninsurable property)과 다른 하나는 特別히 附保措置를 하지 않는 限 基本契約에서 擔保하지 아니하는 除外財產(excepted property)으로 分類할 수 있다. 附保不能財產으로서도 列擧되어 있는 財產은 會計計算書類(accounts), 各種證書(bills), 通貨(currency), 不動產所有權 등에 관한 法文書類(deeds), 債務債權關係書類(evidences of debt), 貨幣(money), 有價證券書(securities) 등이다.

除外財產에는 金銀地金(bullion)과 原稿類(manuscripts)를 包含하고 있다.

위에서 列擧한 附保不能財產은 嚴格히 말해서 財產으로 看做하기 보다는 所有權에 관한

證據書類나 交換의 媒介物로 보는 것이 妥當하므로 이를 火災保險對象財產에서 除外하였다.

企業의 受取計定에 包含될수 있는 各種 書類나 帳簿 등이 火災로 燒失됨으로써 입는 企業의 間接損害는 이를 受取計定保險(accounts receivable insurance)을 통하여 補償받을 수 있다.

地金이나 原稿 등을 除外財產으로 取扱하여 이를 特別히 附保토록 規定하고 있는 것은 主로 火災發生時에 그 財產의 價値에 관해서 保險契約 當事者間에 誤解가 일어날 수 있는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며 이런 可能性을 考慮해서 이와 같은 財產의 附保에 관해서는 保險者와 保險契約者가 서로 別途로 協議해서 附保與否와 그 細目에 關해서 合意토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에는 保險證書에 明記하지 않는 限 이를 保險對象으로 할 수 없는 財產의 種類를 넷으로 區分하여 列擧하고 있다. 첫째로 門, 담, 벽, 庫間, 虛間, 그리고 이 밖의 附屬建物을 規定하고 있고 둘째로 貨幣, 有價證券, 印紙, 郵票, 그리고 이에 準하는 物件을 規定하고 있으며 세째로 貴金屬, 寶石, 書畵, 骨董品, 彫刻物 그리고 이 밖의 美術品을 規定하고 있고 네째로 稿本, 設計圖, 圖案, 鑄型, 模型, 紙型, 證書, 帳簿, 그리고 其他 이에 準하는 物件으로 規定하고 있다.

建物을 附保하였을 경우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所有하는 「다리미」나 建具, 그리고 그 밖의 從屬物에 關해서나 電氣, 개스, 煖房, 冷房, 그리고 그 밖의 附屬設備는 特別한 合意가 없는限 亦是 保險對象에서 除外하고 있다. 또한 家具, 衣類 그 밖의 家財를 附保할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世帶主인 경우 그의 親族의 所有物에 대해서는 이를 特約을 통해서 除外하게 되어 있으며 特約이 없는 경우에는 別途의 合意없이 이를 保險對象에 包含하게 된다.

이렇게 美國의 경우와 우리나라나 日本의 경우를 보면 前者의 경우가 훨씬 간결함을 알 수 있다. 美國에서도 1886年이나 1918年 標準火災保險契約에는 우리나라나 日本의 경우처럼 많은 財產의 種類를 列擧토록 하였으며 特約이 없는 限 이를 保險對象에서 除外하였었다.

不擔保危險

美國標準火災保險契約에는 擔保치 아니하는 危險을 列擧하고 있다. 첫째로 大異變的인 危險과 이의 發生으로부터 입는 損害를 保險對象에서 除外하기 위해서 核武器攻擊을 包含한 戰爭, 敵對行爲, 反亂, 革命, 內亂, 그리고 이와 類似한 現象까지를 包含하여 比較的

자세히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戰爭危險의 定義가 그리 容易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行政當局의 命令에 의해서 附保財産에 發生한 損害는 基本約款에서 擔保하지 아니한 危險의 發生으로 起因되지 않고 火災의 擴大를 防止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하여 破壞하지 않는 限 이를 補償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그 損害의 性質上 突發的이며 偶然的이 아니고 豫測할 수 없기 때문에 行政當局의 命令에 의한 附保財産에 대한 損害는 補償對象에서 除外되고 있다. 그 例를 들어 보면 武裝強盜가 占據하고 있는 第3者인 保險契約者의 建物을 警察이 放火하는 경우라든지 페스트 같은 傳染病의 만연을 防止하기 위하여 保健當局이 保險契約者의 家屋을 燒却시켜 버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大火의 擴大를 防止하기 위하여 行政當局의 命令에 의해서 建物을 미리 爆破해 버릴 경우에는 이로 因한 損害를 補償한다.

또한 火災가 發生할 때에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遲滯없이 保險에 加入치 않았을 경우에 取할 수 있는 모든 措置를 取하여 損害의 擴大를 未然에 防止하고 既히 發生한 損害의 程度를 最少限度로 減少시키도록 最善의 努力을 할 것을 保險契約을 통하여 義務化시키고 있다. 例를 들어 建物內에 火災가 發生하였을 경우 그 建物內의 家具 등 財産을 재빨리 安全한 곳으로 옮기도록 努力하고 지체없이 火災警報器를 울리도록 하며 鎭火가 된 뒤에는 機械에 녹이 쓸지 않도록 기름을 바르도록 하는 따위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注意할 것은 위에서 保險者가 要求한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義務를 忠實히 그리고 合理的으로 履行하였는지의 與否를 決定한다는 것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며 이 規定의 違反이 있었다는 事實은 어디까지나 保險者가 立證하게 되어 있다.

盜難(theft)으로 因한 損害는 이를 補償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盜難危險이 火災危險과는 別途의 獨立된 危險으로 看做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火災가 發生한 結果 盜難을 當하게 됨으로써 火災危險이 近因으로 作用하여 盜難을 當하였을 때에는 火災保險基本契約에서 補償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考慮하여 明文으로 盜難危險의 除外를 規定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 또는 그의 代理人이 故意나 重大한 過失 또는 法令違反으로 因하여 發生시킨 損害는 補償치 않으며 火災時의 紛失이나 盜難, 自然發熱이나 醱酵乾燥 등 保險對象財産自體의 固有한 性質로 因한 損害, 爆發, 戰爭, 暴動, 事變, 政治的 謀略行爲, 地震 등으로 因한 損害도 補償치 않음을 規定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比較的 近代化되어 있는 탓으로 이밖에 放射線照射나 放射能汚染 그리고 原子力 등으로 因한 損害를 補償치 않는 損害에 包含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도 美國의 경우와 같이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에게 損害防止義務를 負課하고 있으며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이 義務를 怠慢히 하였을 경우에는 防止나 輕減할 수 있었을 損害額을 補償額에서 控除함을 規定하고 있다. 損害防止나 輕減을 위해서 支出된 費用은 保險金額과는 別途로 補償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이 約款에서는 損害防止費用을 全然 負擔하지 않음을 明文化하고 있음에 留意해야 한다.

契約解除

保險者는 保險對象財產의 危險增加 등 危險變動에 對備하기 위하여 標準火災保險契約에 特別規定을 두어 保險契約을 解除할 수 있음을 明文化하고 있다.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이 保險契約을 自動的으로 解約한다는 것이 아니고 保險者가 保險效力을 解除하거나 制限하는 措置를 取한다는 點이다. 萬一 危險變動이란 事實이 끝났을 경우 保險契約의 效力은 또 다시 完全히 回復된다.

基本約款에서 規定하고 있는 危險變動이란 現象은 셋으로 明示하고 있는데 첫째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統制할 수 있거나 認知하는 狀態下에서 危險이 增加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附保建物의 占有使用이 60日 以上 中止될 경우이며 세째로 爆發이나 暴動으로 因한 것이고 이러한 세가지 事由로 말미암아 損害가 發生할 때 保險者는 負責하지 않는다는 點을 明白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세째번 事由인 爆發이나 暴動으로 因한 損害 가운데 火災를 發生케 할 경우에는 火災로 因한 損害에 局限하여 負責한다.

위에 列擧한 事由가 일어날 때 保險責任者나 被保險者는 書面으로 保險者에게 通知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런 事由가 發生하고 있는 동안 別途書面通知가 없는 限 保險效力이 停止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規定을 두는 理由 가운데 하나는 保險契約을 締結할 當時의 危險狀態를 土臺로 保險者의 危險引受가 이루어졌고 이런 危險狀態는 앞으로 繼續되고 別로 變動이 없다는 前提下에 締結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前提에서 保險料率이 決定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萬若危險에 變動이 있을 경우에는 保險者는 保險契約을 解除시키거나 追加保險料를 徵收할 수 있는 選擇權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特記하여 둘것은 實際의 경우에 있어 危險의 變動에 관한 判斷을 明確히 내리기가 그리 容易하지 않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先進國에서는 往往 이런 問題를 法廷에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判定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나 日本의 경우 通知義務란 條項을 두어 이런 경우를 規定하고 있다. 이 條項에 規定하는 여섯가지 事項中 危險變動에 관한 것이 넷이 있다. 첫째는 保險目的物이나

이를 收容하는 建物의 構造를 變更하거나 改築하거나 增築하거나 또는 계속하여 15日以上에 걸쳐 修理할 경우이고 둘째는 保險對象인 建物이나 保險目的物을 收容하고 있는 建物을 계속하여 30日以上 空家로 비워두거나 그 建物을 工場으로 使用하고 있을 때에는 30日以上 作業을 하지 않을 경우이며 세째로 保險目的物을 다른 場所로 移轉하는 경우이고 네째로 保險目的物의 用途가 變更되거나 그 危險이 顯著히 增加하는 경우이다. 세째번 경우에 있어서 危險을 避하기 위하여 移轉하는 때에는 5日間은 無妨하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두가지로 區分하여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通知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하나는 이런 事由가 建物의 大修理처럼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責任으로 歸屬시킬 수 있는 性質의 것으로 말미암아 發生할 경우에는 事前에 書面으로 保險者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事由가 그들의 責任으로 歸屬시킬 수 없는 形便일 경우로서 그 例로 隣接附邊에 住宅이 없어 空地割引을 받는 附保住宅이 그 周邊에 家屋이 建立되어 空地割引의 事由가 없어졌을 경우를 들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이런 事實을 認知한 即時 遲滯없이 書面으로 그 事由를 保險者에게 通知하게 되어 있다. 이런 通知를 받은 保險者는 保險證書에 그 事實의 認定을 裏書로 承認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追加保險料를 徵收할 수 있다.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이 追加保險料의 支拂을 怠慢히 하였을 때에는 保險者는 이 追加保險料領收以前에 發生한 損害에 대해서는 補償責任을 지지 않을 수 있다.

追加保險과 追加條項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形便에 알맞도록 새로운 危險이나 財產이나 條項 등을 基本契約에 追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特別한 規定을 設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趣旨를 書面으로 基本契約에 特約으로 添加하게 되어 있다.

이런 規定을 두는 理由는 元來 基本契約이 가장 普遍的인 경우를 생각하여 準備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나 妥當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普遍的인 경우가 아니고 特別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事由나 必要를 特約의 形式으로 基本約款에 追加할 수 있다.

基本契約에 明示된 火災나 落雷 등 危險以外에도 다른 危險을 追加할 수 있으므로 火災聯關危險을 必要에 따라 적지 않게 追加할 수 있다. 危險追加의 決定은 어디까지나 保險契約者가 行하게 되어 있다. 새로이 危險이 追加되면 이에 隨伴하여 必要로 하는 各種 條項이 있어야 하기 마련이므로 여기에 追加條項에 관한 規定이 있어야 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追加條項에 관한 規定에 있어서 注意할 것은 이 追加되는 條項들은 모두 書面이 되어야 한다는 點이며 이런 條項들은 이 基本契約의 것들과 相馳되고 矛盾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權利拋棄條項

保險에 適用하는 權利拋棄(waiver)原理와 이에 附隨되는 禁反言(estoppel)原理에 대해서 簡單히 살펴 보기로 한다. 이 權利拋棄條項을 挿入한 根本趣旨는 保險者를 代表하고 代理하는 立場에서 保險契約의 內容을 協商하는 者가 口頭로 恣意로 基本契約의 內容을 變更하는 權利拋棄를 防止하기 위하여서이며 따라서 反言을 禁하고 防止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保險者를 代表하고 代理하는 保險代理人 등이 保險契約 內容에 관하여 口頭로 保險契約者에게 約束한 경우 法的으로 그 有效性을 否定할 수 없는 것이 保險者의 立場이므로 이것을 部分的으로 解決하기 위해서 基本契約條項에 대한 權利拋棄는 書面이 아니고서는 有效하지 않음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이런 保險者의 意圖가 法廷에서 認定되리라는 保障은 없다고 하겠다. 이 條項의 效果란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이 條項의 履行을 誠實하게 수행하는데 있다고 보겠으나 萬若 그들이 保險者의 代理人 등의 權利拋棄事實을 正當하게 問題化시켜 保險金請求를 要求할 경우에는 이 條項으로 이 請求를 拒否할 수 있는 法的 保障은 決코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保險契約 解約條項

保險契約은 保險契約者나 保險者 가운데 어느 一方에 의해서 어느 때에나 解約될 수 있다. 保險契約者의 要請에 의해서 解約이 될 경우에는 旣히 發行된 保險證券을 保險者에게 返還해야 하며 이에 따라 保險者는 殘餘保險期間에 該當되는 旣拂保險料의 一部를 돌려 받는데 그 計算方法은 保險契約에 明示되어 있는 短期保險料率(short rates)에 의거하여 計算하여 還拂하게 되어 있다.

保險者가 解約할 경우 保險契約者에 대해서 5日間의 餘裕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 期間에 保險契約者는 다른 保險者와 締結해야 한다. 이렇게 保險者의 要請으로 解約할 경우 保險者는 解約通知者와 같이 未經過된 保險期間에 該當하는 比例的인 比率에 該當하는 保險料를 保險契約者에게 支拂하는 것이 通例이다. 그러나 이 條項에는 未經過期間에 대한 比例的인 部分에 該當하는 保險料의 返還은 保險者의 解約通知書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는 保險契約者가 要求할 경우에 限해서 還拂하여 준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分明히 하여 둘 것은 未經過保險期間에 대한 還拂保險料算出 方法에 있어서 保險契約者가 解約할 경우와 保險者가 解約할 경우가 各己 다르다는 點이며 前者의 경우에는 旣經過保險期間에 대한 保險料計算이 短期料率을 適用하는 탓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에 比하여 高率이기 마련이고 後者의 경우에는 比例的이므로 원래 부과된 料率과 同率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比例的 部分(prorata basis)이라고 함은 例를 들어 1年期間으로 保險契約을 締結한 후 120日 후에 保險者가 解約한다고 假定할 때 旣拂 一年保險料 가운데 $\frac{120}{365}$ 을 經過保險料로 取扱하여 保險者의 몫으로 되는 것이고 $\frac{245}{635}$를 未經過部分으로 取扱하여 保險契約者의 몫으로 計算되어 還拂되는 것을 말한다.

이 標準火災保險證書條項에는 抵當權取得者가 被保險者로 指名되어 있지는 않으나 保險金受領者로 되어 있을 경우을 考慮하여 特別한 規定을 두고 있는 바 이 規定에 의하면 保險者는 이들에게 10日의 餘裕期間을 주고 解約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를 보면 美國의 경우처럼 解約條項이 簡潔하지 않고 몇몇 條項에 散發的으로 表現되어 있다. 첫째로 保險契約의 無効에 관한 條項을 줄 수 있는바 이에는 두가지 경우를 明記하고 있다. 即 그 하나는 他人을 위해서 保險契約을 締結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 保險契約者는 그 事實을 保險請約書에 記載해야 함에도 不拘하고 이를 明記치 않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保險契約을 締結할 當時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保險對象財產에 이미 火災를 입었음을 알고 있거나 火災發生原因의 存在를 알고 있을 때이다. 이 경우 保險契約者가 그 事實을 모르는 가운데 保險契約을 締結할 때에는 그 契約은 有効하다고 認定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保險料의 返還에 있어서는 保險者의 責任으로 돌릴 수 없는 事由로 因하여 無效로 될 경우에는 保險料를 返還치 않는다. 그러나 保險者의 責任으로 歸屬되는 事由로 因할 경우에는 保險料의 全額을 返還하게 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失效의 경우까지도 생각하여 보면 그 失效의 原因이 保險者의 責任으로 歸屬되지 않는 事由인 경우에는 保險料를 返還치 않으며 그와 反對로 保險者의 責任으로 歸屬되는 事由로 인하여 失效될 경우에는 未經過期間에 대해서 比例的으로 日割計算해서 保險料를 返還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失效의 경우란 例를 들어 保險目的物이 保險事故 以外의 事故로 損害를 입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保險契約은 失效가 된다. 即 保險目的物이 洪水로 因하여 流失되는 경우를 그 例로 들 수 있겠다.

앞서 說明한바 있는 告知義務나 通知義務를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履行치 않을 경우 保險者는 保險契約을 解除할 수 있는데 이때 保險料의 返還은 美國約款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即 保險契約者가 解約할 경우에는 短期料率을 適用하여 經過保險期間을 計算하여 未經過保險期間에 該當하는 保險料를 返還하고 保險者가 解約할 경우에는 比例的으로 日割計算하여 未經過保險期間에 該當하는 保險料를 返還한다.

保險契約의 無效, 失效, 解除 등의 경우에 있어서 保險期間이 1年을 超過할 때 이런 事

由가 發生한 해에는 只今까지 說明한 바와 같이 處理하나 그 以外의 年度에 대한 保險料에 대해서는 金額을 返還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保險事故條項

美國約款에는 保險事故가 發生하였을 경우 이에 對處하는 條項을 比較的 仔細히 規定하고 있다.

먼저 規定하고 있는 것이 損害發生時의 抵當權者의 義務에 관한 것이다.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抵當權者가 保險契約者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損害가 發生하여 保險金의 一部나 全部를 抵當權者에게 支給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10日의 猶豫期間을 주고 文書로 通告를 내어 解約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고 萬一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損害에 관한 立證資料損償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抵當權者가 이 解約通告를 받은 후 60日 이내에 保險契約에 規定된 바에 의해서 損害에 관한 立證資料를 提出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抵當權者는 裁定이나 保險金支給이나 提訴에 관해서는 이 保險契約의 規定에 따른다는 點을 明記하고 있다. 그리고 保險金을 抵當權者에게 支給할 경우에는 抵當權者의 抵當權設定者에 대한 一切의 權利를 保險者가 委任받는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必要한 條項은 別途로 特約을 통해서 追加할 수 있다고 明示하고 있다.

保險金分擔條項(contribution clause)이 있는데 이 條項을 통해서는 한 保險事故에 두 保險者以上이 關係될 경우 各保險者의 責任은 이에 關係되는 保險者가 支拂能力이 있건 없건간에 支給保險金과 各保險者의 該當比率部分에 대해서만 支給責任을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該當比率部分은 어떤 保險者가 責任진 保險金額과 그 保險에 關係되는 모든 保險者가 責任지는 保險金額과의 比率을 算出하여 그 比率을 損害額에 適用하여 算出한다.

例를 들어 이 條項에 의하면 어떤 建物에 대해서 A保險會社는 $20,000의 火災保險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建物에 대해서 B保險會社는 $10,000의 火災保險계약을 체결하였다고 假定하고 火災로 因한 損害가 $9,000에 達한다고 할 경우 A會社는 20,000/(20,000+10,000)인 2/3를 負擔해야 하므로 $6,000을 支給해야 되고 B保險會社는 10,000/(20,000+10,000)인 1/3을 負擔하게 되므로 $3,000을 支給해야 한다.

이러한 比率負責原則의 理論的 根據는 保險契約者가 特定된 危險物件에 대해서 火災와 같은 危險이 發生할 경우 여러 保險者로부터 保險金을 支給받음으로써 利益을 볼 수 있는 可能性을 防止하기 위함이고 또한 破算與否를 莫論하고 關係되는 保險者는 모두 各己 自己의 比例的인 比率로 負責하는 것은 實力있는 保險者가 實力없는 破算된 保險者의 責任을 代行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여기에 注意해야 할 것은 比例分擔케 되는 경우란 둘 以上의 保險者가 發行한 火災保險證書이 同一財產을 對象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特定된 財產의 同一權益을 對象으로 하는 경우이며 損害가 發生할 當時 保險契約이 有效해야 한다는 點이다.

火災保險契約에서 擔保로 하는 危險이 發生하여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損害를 입을 경우 그 契約에 規定된 바에 의해서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遲滯없이 損害發生을 保險者에게 通告하고 損害나 被害를 最少限度로 減少시키도록 措置해야 하며 60日 以內에 保險者에게 保險金請求를 해야 한다. 이 保險金請求에는 損害를 입었다는 證據나 證明이나 損害額 등을 提示해야 한다. 이를 좀더 仔細히 說明하면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損害立證에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記錄해야 한다. 損害發生 時間과 場所, 被害를 입은 財產에 대한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所有權과 그 밖의 所有權의 明示 被害를 입은 財產의 實際現金價値와 被害金額, 有效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莫論하고 同一財產을 對象으로 하는 保險契約의 明示, 保險證券이 發行된 뒤 그 財產의 所有權의 變動, 抵當權設定의 有能, 用途, 使用目的, 位置 등에 관해서 保險者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破壞되거나 被害를 입은 建物, 備品, 機械 등에 관한 設計나 明細를 提出해야 한다. 또한 損害發生 當時의 建物使用者와 使用目的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保險者가 指名하는 사람에게 모든 殘存物을 展示하고 檢査를 받아야 하며 損害를 입은 財產에 대한 發注書, 計算書 會計帳簿 등의 諸般 證憑서류를 提出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事實의 提供에 있어서는 서약을 하고 署名하게 되어 있으며 흔히 保險者가 提供하는 樣式을 利用하는 것이 便利하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를 보면 몇몇 條項을 통해서 損害發生處理를 規定하고 있다.

첫째로 損害의 發生이나 危險의 發生에 관한 條項을 통해서 保險者가 擔保하는 危險의 發生으로 損害가 發生하였음을 안 때에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遲滯없이 書面으로 이를 保險者에게 通知하고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費用으로 火災狀況調書와 損害見積書를 作成해서 이를 保險者가 要求하는 證據書類, 帳簿 其他書類를 添附해서 提出하게 되어 있는데 그 提出期間은 損害發生을 通知한 날로부터 30日以內나 또는 保險者로부터 書面으로 承認받은 猶豫期間內로 規定되어 있다. 火災狀況調書나 損害見積書用紙는 保險者에게 準備되어 있으므로 保險者의 이 一定한 樣式을 利用하는 것이 便利하다.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上記의 手續을 怠慢히 하거나 앞서 言及한 各種提出書類에 故意로 不實事項을 表示하거나 또는 그 書類나 證據를 僞造나 또는 變造를 하였을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損害補償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를 喪失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保險金支給義務는 2年이라고 商法에 規定되어 있다.

保險者가 補償하는 損害額은 損害가 發生한 때와 場所에 있어서의 保險目的 財產의 價格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規定하고 있는바 이는 抽象的인 表現이므로 大體로 通用되고 있는 例를 들어 說明하기로 한다.

建物은 新築이나 再築費에서 損耗나 消耗程度에 適合한 減價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損害補償金額을 決定하고 商品의 경우 販賣業者手中에 있는 商品에 대해서는 調達原價로 하고 販賣利益은 이에 包含하지 않는다. 製品의 경우 製造業者의 手中에 있는 製品이나 半製品에 있어서는 製造原價에 의해서 決定되며 製造原價는 各種 經營費用을 包含하나 販賣利益은 考慮하지 않는다. 家具什器는 新品購入費나 再買入費에서 損耗나 消耗의 程度에 따른 減價金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損害가 發生하였을 경우 保險者는 事故가 發生한 建物이나 構內를 調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收容되어 있는 被保險者의 所有物의 全部나 一部를 調査함과 同時에 이를 分類하며 必要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다른 場所에 一時 移轉시킨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다. 이와 같은 保險者의 行爲에 대해서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應諾치 않으면 안되며 이런 保險者의 行爲는 損害調査를 進捗시키고 損害의 增加를 防止하기 위해서 取하는 것이다.

燒殘物의 所有權에 있어서는 保險者가 이를 取得치 않겠다는 뜻을 表示하지 않는 限 保險者의 所有物로 된다. 保險對象財產이 元來의 使用用途를 위한 經濟價値를 完全히 喪失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殘存物이 있을 때에는 保險者가 全損으로 認定하며 全保險金額을 支給한 限 그 殘存物에 대한 所有權의 法的으로 保險者에게 移轉되는 것은 當然한 理致라고 하겠으며 一部 保險인 경우에는 附保全額이 附不能價値에 대해서 차지하는 比率에 該當하는 部分이 保險者의 所有로 歸屬된다. 이런 경우 殘存物이 있으면 分損으로 取扱하여 損害額全額에서 殘存物價値에 該當하는 金額을 控除한 殘額을 支給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번거럽고 時間과 費用이 많이 들 경우 保險者는 殘存物를 考慮치 않고 全損으로 取扱하여 保險金을 支給한 다음 殘存物의 所有權을 取得하는 수도 있다.

우리나라나 日本의 約款에는 特別히 損害防止 義務條項을 두어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에 대해서 保險事故發生時損害防止와 輕減을 위해서 努力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萬一 그들이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이 義務를 怠慢히 하였을 경우에는 損害額에서 損害防止 내지 輕減이 不能했으리라고 認定되는 金額을 控除한 殘額을 損害額으로 看做한다는 點을 明文化하고 있고 損害防止와 經減에 所要된 費用은 保險者가 負擔하지 않는다

고 못박고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 保險者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所定의 手續을 밟았을 경우에는 이 날로부터 30日以內에 保險金을 支給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例外規定을 두어 保險者가 이 期間內에 必要한 調査를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調査를 끝낸 뒤 遲滯없이 保險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現物補償인 경우에는 30日이란 時限이 適用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評價 및 裁定(The Appraisal)

美國의 標準約款을 起草한 사람들은 保險事故로 因한 損害額의 決定過程에 있어서 契約當事者들의 判斷이 多分히 介在될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런 關聯者의 잘못된 判斷으로 基因하여 생길 紛爭에 대한 解決方法을 模索하여 이를 위해서 特別히 評價 및 裁定이란 條項을 두어 規定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訴訟事件의 增加를 評價나 裁定과 같은 調停(arbitration)으로 막으려고 하였다.

이 條項에 의하면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를 一方으로 하고 保險者를 他方으로 하는 保險契約 當事者가 保險金額이나 損害額에 대해서 合意를 보지 못할 경우 어느 一方의 書面要請으로 20日 以內에 雙方이 資格이 있고 利害關係가 없는 評價人(appraiser)을 選定해서 相對方에게 各各 通知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任命된 2人의 評價人은 먼저 利害關係가 없는 適格한 裁定人(umpire)을 任命하게 되어 있고 15日 以內에 裁定人의 任命에 관해서 合意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契約當事者中 어느 一方의 要請으로 保險對象인 財產이 所在하는 地方의 管轄法院判事에게 그 任命權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이런 節次가 끝나면 評價人들은 品目이나 財產別로 實現價(實際現金價値)를 따져가면서 損害額을 評價하고 萬一 合意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裁定人에게 그 意見의 差異에 대한 裁定을 要請해야 하고 이 裁定人이 決定한 實現價나 損害額이 곧 保險者가 支給해야 하는 補償金額이 되는 것이다.

評價人에 대한 報酬는 各己 負擔하게 되어 있으며 그밖의 評價와 協定에 所要되는 費用과 裁定人에 대한 費用은 雙方에서 共同으로 절반씩 負擔하게 되어 있다.

이 條項에서 注意할 것은 評價人이나 裁定人이 適格者라야 하고 利害關係가 없어야 한다는 點인데 이것은 評價人이나 裁定人이 損害補償金決定에 있어서 어느 一方에 대해서 金錢的인 利害關係가 있어서는 안되고 關聯者에 대해서 偏見이나 先入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들 評價人은 評價를 위해서 損害를 입은 財產을 檢査할 權利를 附與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도 美國의 경우와 大同小異하다. 即 保險者와 被保險者 사이에 保險目的物의 價格이나 損害額에 대해서 紛爭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紛爭을 다른 問題와 分離시켜서 當事者 雙方이 書面으로 選定하는 各 1名씩의 評價人의 判斷에 一任하도록 하고 萬若 評價人간에 意見이 一致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두 評價人이 選定한 1名의 裁定人(審判人)의 裁定에 따라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保險金額이나 損害額의 決定에 있어서 派生되는 契約當事者間의 紛爭을 法廷밖에서 解決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아 둘 것은 이 條項은 어디까지나 私法上의 契約에 不過하다는 點이며 民事訴訟法에 의한 仲裁手續은 아니라는 點이다.

保險者의 選擇權(Company's options)

美國標準約款에서는 保險事故가 發生할 경우 損害査定을 迅速히 하여 모든 保險契約關聯者의 保險에 대한 認識을 害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善意로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保險事故로 因한 被害額을 엄청나게 過度히 請求할 경우 損害를 입은 財產에 대해서 全損으로 取扱하여 保險金을 支給한 뒤 그 財產을 取得하여 處分할 수 있는 選擇權을 가질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나 保險者는 그가 願할 경우 損害를 입는 財產을 再築하거나 修理하거나 또는 現物로 補償할 수 있는 選擇權을 또한 規定하고 있다. 萬一 保險者가 이처럼 現物補償이란 選擇權을 行使할 경우에는 保險契約은 建設契約으로 轉換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保險者는 保險金額에 限度를 둘 수 있는 領域을 벗어나는 것이며 損害를 입기 以前狀態로 同一 資材를 使用하여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期間內에 復舊시켜 놓을 責任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工事가 遲延될 때에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입는 賃家料支出과 같은 間接損失까지도 負擔해야 된다. 그러므로 萬不得已한 경우가 아니면 이 選擇權을 行使하지 않으며 一般的으로 現金으로 保險金을 支給한다.

保險者가 現物補償選擇權을 行使할 경우에는 그 行使에 대한 決定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로부터 損害發生에 관한 證據書類를 接受한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相對方에게 通告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에도 現物補償에 관한 條項이 設定되어 있다. 即 保險者는 30日 以內에 書面으로 損害의 全部나 一部를 再築이나 修繕할 수 있으며 現品으로 保險金의 支給을 代할 수 있다는 것을 相對方에게 通告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경우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保險者가 要求하는 圖面, 設計書, 그 밖의 書類를 提出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保險委付의 禁止(Abandonment prohibited)

美國標準火災保險契約에는 海上保險에서 許容하는 委付를 認定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 主要한 理由는 火災保險에 있어서는 保險對象財產이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手中에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損害가 發生할 경우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即時救助作業을 할 수 있는 立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에는 別途로 委付禁止에 관한 規定을 두지 않고 있다.

保險金支給付期(When loss payable)

美國標準火災保險契約에 있어서는 保險契約者나 損害立證書類를 保險者에게 提出한 日字로부터 60日 以內에 保險金을 支給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評價나 裁定의 경우에는 이런 行爲가 끝나서 그 金額確定이 通告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保險金을 支給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 保險者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로부터 危險의 發生이나 損害의 發生에 관한 條項에 規定된 各種 書類를 授受한 日字로부터 30日 以內에 保險金을 支給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提訴時期의 制限(Limitation of time to sue)

美國의 火災保險約款에는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와는 달리 이 約款에 規定한 대로 損害發生通告를 하고 損害立證書類를 提出하며 損害査定이나 調査를 끝내고 評價나 裁定이란 節次를 모두 끝내야 비로소 法院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이런 訴訟提起는 火災發生後 1年이 經過치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保險代位(Subrogation)

美國火災保險約款에는 保險者에게 保險代位權이 賦與되어 있는데 이것은 保險金支給限度內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保險者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갖는 第3者에 대한 求償權을 委讓받게 된다. 이 條項으로 말미암아 保險者의 權利가 늘어나는 것은 決코 아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에도 保險事故가 第3者의 行爲로 因하여 發生하였음에도 保險者가 保險金을 支給하였을 경우에는 그 支給保險金限度內에서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第3者에 대해서 가지는 權利를 移讓받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殘存保險金額

우리나라와 日本의 火災保險普通約款에는 美國의 경우와는 달리 殘存保險金額에 관한 條項을 두고 있다. 이 條項에 의하면 分損으로 因하여 支給保險金이 元來 附保된 保險金額

에 未達될 경우 그 差額으로 그 以後의 保險期間에 대한 保險金額으로 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殘存保險金이라고 한다. 또한 이 條項에 의하면 이 殘存保險金이 그 直前의 保險金의 1/5에 未達할 경우에는 保險契約은 終了하게 되어 있다. 또한 保險目的 財産이 2件 以上일 경우에는 各財産別로 그 殘存保險金額을 計算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手 數 料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에는 保險證券의 再交付時에 一定한 金額의 手數料를 支拂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원이라고 確定시키고 있는데 比해서 日本의 경우에는 그 金額을 表示하고 있지 않고 保險者의 定하는 手數料라고만 規定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는 이런 條項이 없다.

保險契約의 繼續

火災保險契約이 滿了한 경우 이 保險契約을 繼續시키고자 할 때에는 保險加入申請書에 記載한 事項이나 保險證券에 承認받은 裏書事項 가운데 變更이 있을 경우 保險契約者는 書面으로 이 事實을 保險者에게 告知하도록 義務化시키고 있으며 이 告知義務에 대해서는 앞서 言及한 前條規定에 의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火災保險契約이 繼續될 경우에는 새로이 保險證券을 發行치 않고 從前의 保險證券과 保險契約繼續證으로 代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 이런 條項을 特別히 둔 理由는 手續의 簡素化를 圖謀하기 위해서이고 保險期間이 滿了될 경우 그 契約과 保險目的物, 保險金額을 같이 하고 保險期間만을 更新하는 事例가 많기 때문이다.

美國의 경우에는 更新될 적마다 새로운 保險契約을 發行하는 것이 通例이다.

火災共濟契約取扱

日本의 경우 1957年에 制定된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에 立脚하여 火災共濟協同組合 사이에 締結되는 火災共濟契約을 認定하여 商法中 損害保險의 總則과 火災保險의 規定이 準用된다는 點을 明確히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火災保險契約에 있어서 告知義務, 通知義務, 그리고 다른 保險契約이 있을 경우의 損害補償額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는데 火災共濟를 火災保險契約이라고 看做한다.

우리나라와 美國에는 이런 規定이 없다. 美國에서는 우리나라와 日本처럼 保險과 共濟를 嚴格히 區別하고 있지 않다.

準 據 法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에는 各各 大韓民國法令과 日本國의 法令에 의해서 여기에 規定이 없는 事項을 取扱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III. 結　　論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基本火災保險契約에 관한 限 美國, 韓國, 그리고 日本에서 相當한 部門에 걸쳐서 類似性을 發見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美國에 未治된다고 생각되는 點이 적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日本보다도 더 改善의 餘地가 많고 硏究의 必要性이 많다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財產保險 가운데 主宗商品이라고 할 수 있는 火災保險商品의 改良에 있어서 基本保險契約의 內容부터 再檢討하여 社會經濟의 與件變動과 保險需要의 變遷에 對備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筆者：서 울 大 學 校 商 科 大 學
韓 國 經 濟 硏 究 所 硏 究 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敎授